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0114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수과정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제품안전 활동을 통해 국민안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2019 제품안전의 날(제품안전관리 유공)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19 제품안전의 날(제품안전관리 유공) 포상요령

2019. 4. 2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본 포상계획 및 포상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상훈법 및 관련법령,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포상관련 규정에 따른다.

2019 제품안전의 날(제품안전관리 유공) 포상요령

이 요령은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순과정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제품안전 활동을 통해 국민안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하여 「2019 제품안전의 날」 행사에서 수여할 포상에 대한 세부 시행사항을 정한다.

1. 기본 방향

- 기업, 소비자단체, 지자체,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포상 후보자 선발
- 포상 대상에 적합한 공적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정성 강화
-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른 유공자 및 유공단체 선정

2. 주최 및 주관

-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주 관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3. 신청기간 : '19. 4. 22(월) ~ 6. 7(금)

* 마감일 이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심사

4. 포상일시 : 「2019 제품안전의 날」 행사에서 포상

* 행사일정(예정) : 2019. 11. 19(화),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 4F

5. 포상의 종류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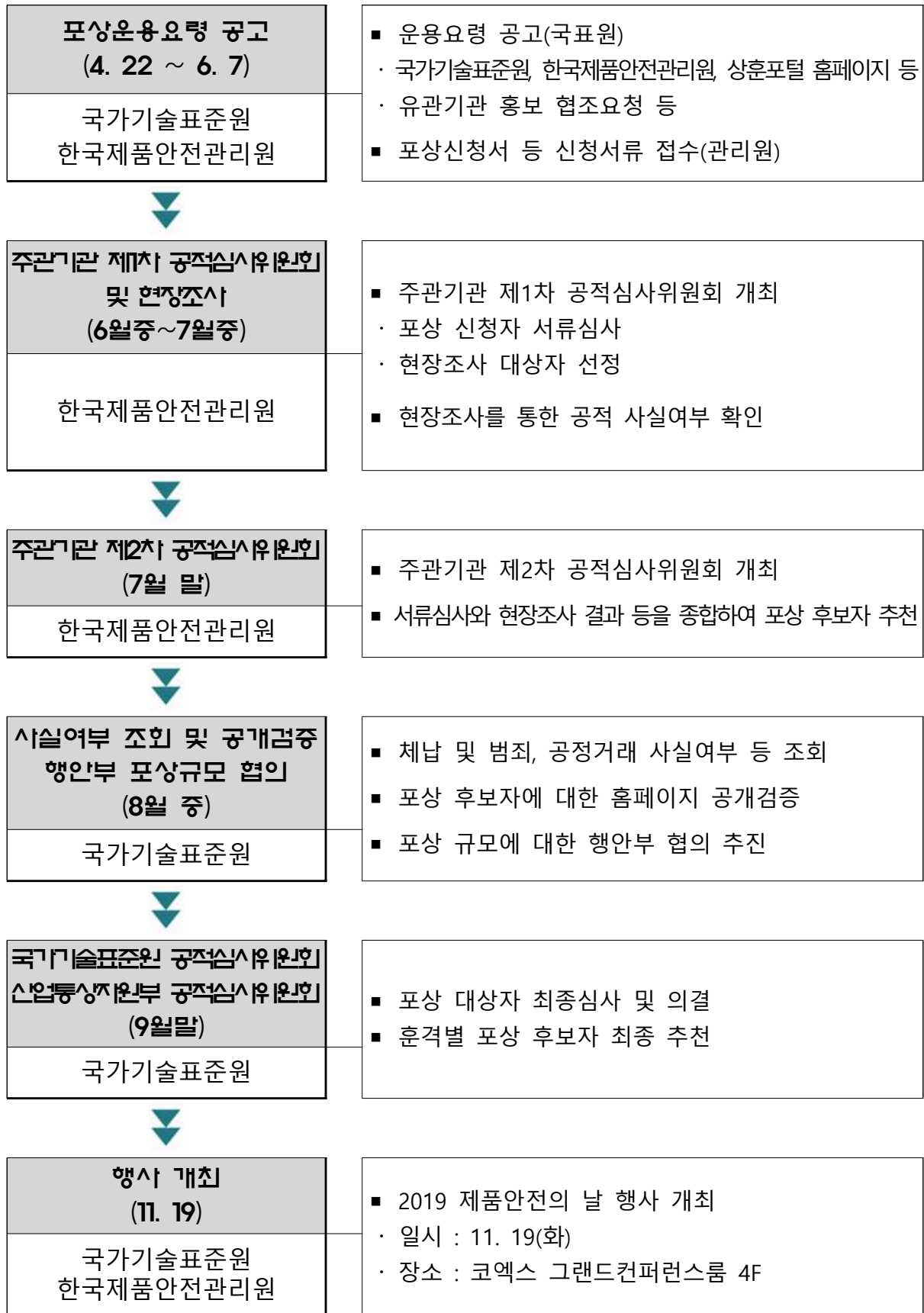
포상 부문	훈격	수량	자격 및 선정대상
제품안전관리 유공자 (개인)	산업 훈·포장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소과정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제품안전 활동을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단체 - 제품안전 연구 및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중유통 제품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불법·불량제품 등 위해제품 유통차단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대통령 표창	0	
	국무총리 표창	0	
	장관 표창	0	
	원장 표창	0	
제품안전관리 유공단체 (단체)	대통령 표창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 홍보·교육 등을 통해 제품안전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기타 제품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학술연구 업적, 제품 안전기준 제·개정 참여, 제품안전제도 개선 등
	국무총리 표창	0	
	장관 표창	0	
	원장 표창	0	

* 포상수량은 연중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협의에 따라 확정

○ 훈격별 포상신청 자격 기준

구분	훈장	포장	표창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원장
최소 공적기간	15년	10년	5년		3년	2년

6. 포상 추진 절차



7. 포상 기준

- 아래 명시된 수공기간과 추천제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정부포상 업무 지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및 국가 기술표준원의 「포상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포상 추천 이전의 지침 개정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가장 최신 내용을 적용
- 공적 기준일자 : '19. 6. 7(금), 신청마감일자
 - 공적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은 공적 기준일자를 바탕으로 계산
 - * 단, 신청인(단체)의 공적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은 정부 추천일을 기준으로 재산정되므로, 본 기준일자를 통해 산정된 공적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과 상이할 수 있음
- 훈격별 포상신청 자격 기준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장관표창은 3년, 원장표창은 2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아야 함(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
- 포상 추천제한
 - 유공자(국무총리표창 이상, 일반국민)
 - 1)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 포장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표창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 기준일 : 직전포상 수여일로부터 금번 포상 추천일
 -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2)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3)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4)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

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5)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6)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7)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 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9)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10)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11)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 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12)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유공단체(국무총리표창 이상, 단체)

1)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 *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 단체는 법인번호로 체납 조회, 법인번호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조회 가능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 되는 단체

- 유공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및 국가기술표준원장표창, 일반국민)

1) 표창추천일 기준으로 직전 산업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최근 2년 내 타부처 장관표창을 수여한 경우는 신청 가능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와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원장)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분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 지침 중 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 유공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및 국가기술표준원장표창, 단체)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 인 상장회사
-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7)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단체)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단체)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단체)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단체)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단체)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원장)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공통사항

- 1) 포상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우리 기관이 관리하는 제품안전법령(「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위반하여 우리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과 그 임원
 - * 개선조치 등 그 처분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추천 가능
- 2)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적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재직, 퇴직공무원 포상기준은 「상훈법」과 그 「시행령」,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 국가기술표준원 포상규정 등을 적용
- 기 타
 - 기타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국가기술표준원 포상규정」에 준함

8. 포상 심사

- 포상심사 절차
 - 서류심사 : 공적 심사기준 적용하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검토
 - 현장조사 : 서류심사 상위 평가자에 대해, 공적사실여부 등 현장 직접 검증
 - 주관기관 공적심사위원회 : 정부포상, 장관 등 포상 후보자 추천
 - 국표원 및 산업부 공적심사위원회 : 훈격별 포상 추천 대상자 선정

구 분	주관기관 공적심사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공적심사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담당기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역 할	- 공적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검토 - 정부포상, 장관(원장)표창 등 정부에 추천할 포상 후보자 선정	- 포상후보의 공적, 제한사항 등 종합검토 - 훈격별 포상 추천 대상자 선정 및 순위 결정 (국무총리표창 이상 후보자 행안부 추천)

9. 포상 신청서 접수

- 신청 기간 : 2019. 4. 22(월) ~ 6. 7(금)
 - * 마감일 이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심사
- 관련서식 배포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ips.kr)
 - * 상기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접수 및 문의처 안내

접수처	주소	전화 (팩스)	접수메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교육홍보팀)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350, 4층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교육홍보팀	070-5223-1395 (02-6952-4256)	jschw@kips.kr

- 직접 내방, 우편물,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류 제출
-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가 접수'로 처리하며, 신청기한 내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식에 맞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 요청할 수 있음

10. 제출서류

○ 유공자(개인) 분야

제출서류	수량	서식	비고
1.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제1호	
2. 포상 신청서	1부	제2호	
3.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	1부	제3호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신청자 이력서	1부	제4호	

○ 유공기업(단체) 분야

제출서류	수량	서식	비고
1.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제1호	
2. 포상 신청서	1부	제2호	
3.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	1부	제3호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대표자 이력서	1부	제4호	

※ 공적조서 내용은 10페이지 이내로 제출

11. 심사기준

○ 공통기준(비중 40%)

* 포상 신청자 및 단체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준

기준명	기준의 설명	가중치
국가발전 기여도	해당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국민생활 향상도	해당 공적이 국민안전과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고객 만족도	해당 공적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사회공헌 기여도	봉사활동, 기부, 협력사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등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 정도	10
합 계		40

○ 특성기준(비중 60%)

* 공적분야별로 차별성 있게 적용하는 기준

- 공적분야 : 제품안전성 강화

기준명	기준의 설명	가중치
공적기간	제품안전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년 수	5
업적도	1. 제품안전성 강화 관련 업적 * 연구 및 기술 개발(R&D), 특히, 제조 프로세스 개선 등 2. 업적에 따른 해당 매출증가, 기술 상용화, 브랜드가치 강화 등 구체적인 성과	15
창조도	기존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난이도	공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 * 기업규모, 해당 업계의 산업환경 등을 고려	10
기여도	공적을 통해 시중유통 제품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한 정도	10
인지도	1. 공적에 대한 언론, SNS 등 노출 2. 공적에 대한 업계 및 사회 전반의 인지정도	5
교육 참여도	(개인) 공식적인 제품안전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 등 학습시간 (단체) 공식적인 사내외 제품안전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 개최 건 수	5
합 계		60

- 공적분야 : 위해제품 유통차단

기준명	기준의 설명	가중치
공적기간	제품안전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년 수	5
업적도	1. 위해제품 유통차단 관련 업적 * 유통차단 프로세스·시스템 개선, 유통제품 출하 불량률 개선,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 도입, 리콜제품 회수율 개선 등 제품안전 협력, 사내 제도개선 사례 등 2. 업적에 따른 해당 매출증가, 위해제품 유통차단 건 수 증가, 브랜드가치 강화 등 구체적인 성과	15
창조도	기존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난이도	공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 * 기업규모, 해당 업계의 산업환경 등을 고려	10
기여도	공적을 통해 불법불량 제품, 리콜제품 등 위해제품 유통차단에 기여한 정도	10
인지도	1. 공적에 대한 언론 등 노출 2. 공적에 대한 업계 및 사회 전반의 인지정도	5
교육 참여도	(개인) 공식적인 사내외 제품안전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 등 학습시간 (단체) 공식적인 사내외 제품안전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 개최 건 수	5
합 계		60

- 공적분야 : 제품안전 교육·홍보

기준명	기준의 설명	가중치
공적기간	제품안전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년 수	5
업적도	1. 제품안전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 * 교육제공, 강연, 언론 기고, 자료발간, 보도자료,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및 세미나, 포럼 개최 등 2. 업적에 따른 교육·홍보 참여도 증가 등 구체적인 성과	20
창조도	기존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난이도	공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 * 기업규모, 해당 업계의 산업환경 등을 고려	10
기여도	제품안전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에 기여한 정도	10
인지도	1. 공적에 대한 언론 등 노출 2. 공적에 대한 업계 및 사회 전반의 인지정도	5
합 계		60

- 공적분야 : 기타 제품안전관리 수준 향상

기준명	기준의 설명	가중치
공적기간	제품안전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년 수	5
업적도	1. 제품안전 관련 정책 참여 및 연구, 제품안전 협력 관련 업적 등 * 제품안전제도 개선 및 제품 안전기준 제·개정 참여,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제품안전모니터링 참여 등 제품안전 협력, 논문/연구회 발표 사례 등 2. 업적에 따른 주요성과	15
창조도	기존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난이도	공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 * 기업규모, 해당 업계의 산업환경 등을 고려	10
기여도	제품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한 정도	10
인지도	1. 공적에 대한 언론 등 노출 2. 공적에 대한 업계 및 사회 전반의 인지정도	5
교육 참여도	(개인) 공식적인 사내외 제품안전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 등 학습시간 (단체) 공식적인 사내외 제품안전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 개최 건 수	5
합 계		60

12. 기타사항

- 포상 심사선정에 있어 세부적인 절차나 지침 또는 본 운용요령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시행일 및 유효기간 : 본 포상 운용요령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여, 차년도 포상 운용요령 공고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 별지 1.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2. 포상 신청서
3. 공적조서
4. 이력서

참고 : 공적내용 작성 가이드라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9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작성요령

1. 유공자의 경우

- 신청자의 '성명', '소속', '직위(급)', '주소'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하단의 '서명'란은 신청자 본인의 성명과 서명(직인)을 기재
-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

2. 유공단체의 경우

- 성명란에 '단체명' 및 '주소'만 기재하고, 하단의 '서명'란은 신청하는 단체의 단체명과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을 날인(명판 대체가능)
-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

2019년 제품안전관리 유공 포상 신청서

1. 기본 정보 (유공자 개인부문 신청인 경우에만 작성)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나이)	-	직 위
거주지 주소		
직무 구분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또는 임원 <input type="checkbox"/> 일반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유관기관 종사자	

2. 업체 기본 정보

업체명(기관명)		대표자	(한글)	
사업자 주소				
기업 구분	(규모)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유관기관		
	(종목)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유통업 <input type="checkbox"/> 유관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산재보험성립번호		공장등록번호		
설립년도	년 월 일	업 종 (주력 생산품목)		
근로자수	총 000명 (연구직 00명, 생산직 00명, 관리직 00명)			
최근 3년 매출액	('16) 만원, ('17) 만원, ('18) 만원			

3. 최근 7년간('12-'19년) 받은 포상수여 및 접수예정 현황(O/X)

- ① 2019년 내, 본 포상 외 다른 정부포상을 신청하였거나 할 예정이 있음
 [O (포상명) : _____ / X □]
- ② 2012.6월~2019.6.7.현재까지 (7년간) 훈장을 수상한 적이 있음
 [O (훈장명) : _____ (____년) / X □]
- ③ 2014.6월~2019.6.7.현재까지 (5년간) 포장을 수상한 적이 있음
 [O (포장명) : _____ (____년) / X □]
- ④ 2016.6월~2019.6.7.현재까지 (3년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적이 있음
 [O (표창명) : _____ (____년) / X □]
- ⑤ 2017.6월~2019.6.7.현재까지 (2년간) 부처별 장관표창, 국표원장 표창을 수상한 적이 있음
 [O (표창명) : _____ (____년) / X □]

2019년 제품안전관리 유공 포상 운용요령에 따라 포상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인)
신청자				(인)

4. 신청서 작성자 성명 : _____ 부서 및 직위 : _____ 이메일 : _____
 전화번호 : _____ (휴대전화 : _____)

포상신청서 작성요령

1. 기본 정보 (※ 유공자 개인부문 신청인 경우에만 작성)

- (성명)은 한글 및 한자 모두 기재
- (주민등록번호) 정부포상운용요령에 따른 포상추천 제한사항 해당여부 및 기 포상수상내역 확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앞, 뒷자리 모두 기재
- (직위) 대표이사, 팀장, 대리 등 현 직위를 기재 / (직무) 해당란에 체크
※ 기업의 대표성을 가진 회장, 대표이사 회장, 대표이사 사장 등의 직위일 경우 명확히 기재
-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등본상의 실 거주하는 주소로써, '도로명 주소' 기재

2. 업체 기본 정보

- (업체명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증의 업체 명칭, 대표자를 기재
※ 하나의 기업에 다수의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본 포상과 관련된 주공장의 사업자등록증 명칭을 기재
- (사업자 주소)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도로명 주소' 기재
- (기업 구분) 규모별 : 산업발전법,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대중견, 중소기업, 유관기관
종목별 : 제조(생산, 조립, 가공), 유통(수입, 판매 등), 유관기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
(대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3. 최근 7년간('12~'19년) 받은 포상수여 및 접수예정 현황

정부포상이란? ex)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 상훈법 및 정부포상지침 등에 따라 각 분야별로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말한다.

- ① 본 포상 외 다른 정부포상을 신청할 예정인 경우 포상명 기재, 없는 경우 X란 체크
- ② 해당 기간 내 훈장수상내역이 있는 경우 훈장명 기재, 없는 경우 X란 체크
- ③ 해당 기간 내 포장수상내역이 있는 경우 포장명 기재, 없는 경우 X란 체크
- ④, ⑤ 해당 기간 내 표창수상내역이 있는 경우 표창명 기재, 없는 경우 X란 체크
※ 수상현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의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재

4. 작성자 내용

- 포상신청자의 공적 문의, 서류미비사항 보완 등 협의를 위하여 반드시 기재
※ 성명, 직위,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공 적 조 서 (분야 : 제품안전성 강화)

※ 음영 부분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1.성 명	(한 자)		
2.주민번호	-	3.군 번 (군인의 경우)	
		4.국 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위		9.직급계급	
10.추천훈격		11.추천순위	
12.공적분야	제품안전성 강화	13.공적기간	년 월 일
14. 공적요지(300자 이내)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직급계급)		17.성 명	(인)
위의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직인

18.주요경력

년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19.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 .	

20.공 적 내 용

- * 공적내용은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할 것
- * 공적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는 일련순으로 기호를 매겨 공적조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가 필요함
- * 공적증빙자료가 없는 공적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 심사기준(공통, 특성기준)에 해당하는 공적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모두 작성 할 것

1. 공적기간(19년 6월 7일 기준)

총 년 월 일(해당 분야에 종사하거나 근무한 경력의 연수)

* 예) 2006년 1월 15일부터 종사했을 경우 공적기간 - 총 13년 4월 23일

2. 업적도

(1) 제품안전성 강화 관련 업적

* 연구 및 기술 개발(R&D), 특허, 제조 프로세스 개선 사례 등 (KC인증은 제외)

- 개 요

구 분	건수	명칭, 기간, 주요내용 등
① 연구 및 기술 개발(R&D)		
② 특허, 실용신안		
③ 제조 프로세스 개선 사례		
④ 기타		

* 동일내용은 같은 건 수로 판단

- 설 명(명칭, 기간, 제품안전성 강화 관련 주요내용, 기존 관행 대비 변화정도 등)

(2) 업적에 따른 해당 매출증가, 기술 상용화, 브랜드가치 강화 등 구체적인 성과

- (정량적 수치(건수·순위·금액·증가율 등)를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

-

3. 인지도

- 공적의 언론 등 노출 실적

구 분	건수	명칭, 날짜 등 개요	주요내용
① 해외언론, 정부보도자료			
② TV, 신문 등 언론보도			
③ 학회, 논문지, SNS 등 기타			

4. 교육 참여도

- (개인) 공식적인 제품안전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 등 학습시간('16.6월부터 최근3년)

구 분	날짜/장소 등 개요	학습시간	주요내용
① 제품안전 관련 교육			
② 제품안전 관련 포럼, 세미나 등			

- (단체) 공식적인 사내외 제품안전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 등 개최 건 수('16.6월부터 최근3년)

구 분	날짜/장소 등 개요	주요내용
① 제품안전 관련 교육		
② 제품안전 관련 포럼, 세미나 등		

5. 사회 공헌도

- 개 요

구 분	건수	명칭, 날짜/장소 등 개요	주요내용

* 일자리 창출, 협력사 상생협력, 환경친화사업 및 문화예술활동 참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부 등

- 설 명

6. 기타 제품안전을 위해 노력한 사항

-

7. 공적이 국가 경쟁력 강화, 국민생활 향상,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사항

- (정량적 수치(건수·순위·금액·증가율 등)를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

-

공 적 조 서 (분 야 : 위 해 제 품 유통 차 단)

※ 음영 부분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1.성 명	(한 자)		
2.주민번호	-	3.군 번 (군인의 경우)	
		4.국 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위		9.직급계급	
10.추천훈격		11.추천순위	
12.공적분야	위해제품 유통차단	13.공적기간	년 월 일
14. 공적요지(300자 이내)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직급계급)		17.성 명	(인)
위의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직인

18.주요경력

년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19.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 .	

20.공 적 내 용

- * 공적내용은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할 것
- * 공적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는 일련순으로 기호를 매겨 공적조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가 필요함
- * 공적증빙자료가 없는 공적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 심사기준(공통, 특성기준)에 해당하는 공적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모두 작성 할 것

1. 공적기간(19년 6월 7일 기준)

총 년 월 일(해당 분야에 종사하거나 근무한 경력의 연수)
 * 예) 2006년 1월 15일부터 종사했을 경우 공적기간 - 총 13년 4월 23일

2. 업적도

(1) 위해제품 유통차단 관련 업적

- * 유통차단 프로세스·시스템 개선 사례, 유통제품 출하 불량률 개선 사례,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 도입, 리콜제품 회수율 개선 등 제품안전 협력 사례, 사내 제도개선 사례 등

- 개 요

구 분	건수	명칭, 기간, 주요내용 등
① 유통차단 프로세스·시스템 개선 사례		
② 유통제품 출하 불량률 개선 사례		
③ 제품안전 협력 사례		
④ 사내 제도개선 사례		
⑤ 기타		

- 설 명(명칭, 기간, 위해제품 유통차단 관련 주요내용, 기존 관행 대비 변화정도 등)

(2) 업적에 따른 해당 매출증가, 유통차단 건수 증가, 브랜드가치 강화 등 구체적인 성과

- (정량적 수치(건수·순위·금액·증가율 등)를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

-

3. 인지도

- 공적의 언론 등 노출 실적

구 분	건수	명칭, 날짜 등 개요	주요내용
① 해외언론, 정부보도자료			
② TV, 신문 등 언론보도			
③ 학회, 논문지, SNS 등 기타			

4. 교육 참여도

- (개인) 공식적인 제품안전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 등 학습시간('16.6월부터 최근3년)

구 분	날짜/장소 등 개요	학습시간	주요내용
① 제품안전 관련 교육			
② 제품안전 관련 포럼, 세미나 등			

- (단체) 공식적인 사내외 제품안전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 등 개최 건 수('16.6월부터 최근3년)

구 분	날짜/장소 등 개요	주요내용
① 제품안전 관련 교육		
② 제품안전 관련 포럼, 세미나 등		

5. 사회 공헌도

- 개 요

구 분	건수	명칭, 날짜/장소 등 개요	주요내용

* 일자리 창출, 협력사 상생협력, 환경친화사업 및 문화예술활동 참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부 등

- 설 명

6. 기타 제품안전을 위해 노력한 사항

-

7. 공적이 국가 경쟁력 강화, 국민생활 향상,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사항

- (정량적 수치(건수·순위·금액·증가율 등)를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

-

공 적 조 서 (분 야 : 제 품 안 전 교 육 · 흥 보)

※ 음영 부분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1.성 명	(한 자)		
2.주민번호	-	3.군 번 (군인의 경우)	
		4.국 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위		9.직급계급	
10.추천훈격		11.추천순위	
12.공적분야	제품안전 교육·홍보	13.공적기간	년 월 일
14. 공적요지(300자 이내)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직급계급)		17.성 명	(인)
위의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18.주요경력

년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19.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 .	

20.공 적 내 용

- * 공적내용은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할 것
- * 공적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는 일련순으로 기호를 매겨 공적조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가 필요함
- * 공적증빙자료가 없는 공적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 심사기준(공통, 특성기준)에 해당하는 공적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모두 작성 할 것

1. 공적기간(19년 6월 7일 기준)

총 년 월 일(해당 분야에 종사하거나 근무한 경력의 연수)

* 예) 2006년 1월 15일부터 종사했을 경우 공적기간 - 총 13년 4월 23일

2. 업적도

(1) 제품안전 교육·홍보 관련 업적

- * 교육제공, 강연, 언론 기고, 자료발간, 보도자료,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및 세미나, 포럼 개최 등
- 개 요

구 분	건수	명칭, 기간, 주요내용 등
① 교육제공, 강연 등 제품안전 교육		
② 보도자료, 기고 등 제품안전 홍보		
③ 기타		

- 설 명(명칭, 기간, 제품안전 관련 주요내용, 기존 관행 대비 변화정도 등)

(2) 업적에 따른 교육·홍보 참여도 증가 등 구체적인 성과

- (정량적 수치(건수·순위·금액·증가율 등)를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

-

3. 인지도

- 공적의 언론 등 노출 실적

구 분	건수	명칭, 날짜 등 개요	주요내용
① 해외언론, 정부보도자료			
② TV, 신문 등 언론보도			
③ 학회, 논문지, SNS 등 기타			

4. 교육 참여도

- (개인) 공식적인 제품안전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 등 학습시간('16.6월부터 최근3년)

구 분	날짜/장소 등 개요	학습시간	주요내용
① 제품안전 관련 교육			
② 제품안전 관련 포럼, 세미나 등			

- (단체) 공식적인 사내외 제품안전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 등 개최 건 수('16.6월부터 최근3년)

구 분	날짜/장소 등 개요	주요내용
① 제품안전 관련 교육		
② 제품안전 관련 포럼, 세미나 등		

5. 사회 공헌도

- 개 요

구 분	건수	명칭, 날짜/장소 등 개요	주요내용

* 일자리 창출, 협력사 상생협력, 환경친화사업 및 문화예술활동 참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부 등

- 설 명

6. 기타 제품안전을 위해 노력한 사항

-

7. 공적이 국가 경쟁력 강화, 국민생활 향상,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사항

- (정량적 수치(건수·순위·금액·증가율 등)를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

-

공 적 조 서 (분야 : 기타 제품안전관리 수준 향상)

※ 음영 부분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1.성 명	(한 자)		
2.주민번호	-	3.군 번 (군인의 경우)	
		4.국 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위		9.직급계급	
10.추천훈격		11.추천순위	
12.공적분야	기타 제품안전관리 수준 향상	13.공적기간	년 월 일
14. 공적요지(300자 이내)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직급계급)		17.성 명	(인)
위의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18.주요경력

년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19.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20.공 적 내 용

- * 공적내용은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할 것
- * 공적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는 일련순으로 기호를 매겨 공적조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가 필요함
- * 공적증빙자료가 없는 공적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 심사기준(공통, 특성기준)에 해당하는 공적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모두 작성 할 것

1. 공적기간(19년 6월 7일 기준)

총 년 월 일(해당 분야에 종사하거나 근무한 경력의 연수)

* 예) 2006년 1월 15일부터 종사했을 경우 공적기간 - 총 13년 4월 23일

2. 업적도

(1) 제품안전 관련 정책 참여 및 연구, 제품안전 협력 관련 업적 등

- * 제품안전제도 개선 및 제품 안전기준 제·개정 참여 사례,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제품 안전모니터링 등 제품안전 협력 사례, 논문/연구회 발표 사례 등

- 개 요

구 분	건수	명칭, 기간, 주요내용 등
① 제품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기준 제개정 참여 사례		
② 제품안전 협력 사례		
③ 논문/연구회 발표 사례		
④ 기타		

- 설 명(명칭, 기간, 제품안전 관련 주요 내용, 기존 관행 대비 변화정도 등)

(2) 업적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

- (정량적 수치(건수·순위·금액·증가율 등)를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
-

3. 인지도

- 공적의 언론 등 노출 실적

구 분	건수	명칭, 날짜 등 개요	주요내용
① 해외언론, 정부보도자료			
② TV, 신문 등 언론보도			
③ 학회, 논문지, SNS 등 기타			

4. 교육 참여도

- (개인) 공식적인 제품안전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 등 학습시간('16.6월부터 최근3년)

구 분	날짜/장소 등 개요	학습시간	주요내용
① 제품안전 관련 교육			
② 제품안전 관련 포럼, 세미나 등			

- (단체) 공식적인 사내외 제품안전 관련 교육, 포럼, 세미나 등 개최 건 수('16.6월부터 최근3년)

구 분	날짜/장소 등 개요	주요내용
① 제품안전 관련 교육		
② 제품안전 관련 포럼, 세미나 등		

5. 사회 공헌도

- 개 요

구 분	건수	명칭, 날짜/장소 등 개요	주요내용

* 일자리 창출, 협력사 상생협력, 환경친화사업 및 문화예술활동 참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부 등

- 설 명

6. 기타 제품안전을 위해 노력한 사항

-

7. 공적이 국가 경쟁력 강화, 국민생활 향상,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사항

- (정량적 수치(건수·순위·금액·증가율 등)를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

-

공적조서 작성요령

1. **(1.성명)** 개인일 경우 이름, 기업(단체)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업 (단체) 명을 정확히 기재
※ 예)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명이 (주)한국제품인 경우, 주식회사 한국제품(X), 한국제품(주)(X)
2. **(2.주민등록번호)**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필수 기재, 기업(단체)는 '공란'
3. **(3.군번 / 4.국적)** 해당자만 기재
4. **(5.주소)** 개인일 경우 '거주지 주소', 기업(단체)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 기재(필히 '도로명 주소'로 입력)
5. **(6.직업 ~ 7.직급·계급)** 개인일 경우 모두 기재, 기업(단체)일 경우 '공란'
6. **(10.추천훈격 ~ 11.추천순위)** 기재하지 아니함
7. **(12.공적분야)** '제품의 안전성 강화', '위해제품 유통차단', '제품안전 교육 홍보', '기타 제품안전관리 수준 향상' 중 택1
8. **(13.공적기간)** 2019. 6. 7 기준으로 일 단위까지 기재
 - 개인 : 신청자 본인의 이전 근무지부터 현 근무지를 포함하여 계산
 - 기업(단체) : 신청하는 기업(단체)의 설립일 기준으로 계산※ 예) 2006년 1월 15일부터 종사했을 경우 공적기간 - 총 13년 4월 23일
9. **(14.공적요지)** 제품안전과 관련된 공적내용을 300자 이내,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10. **(15.소속 ~ 17.성명)** '조사자' 이하부분 기재하지 아니함
11. **(18.주요경력)** 최종학력, 근무경력 기입(주요 사항만 작성, 필요시 줄 추가)
12. **(19.과거포상기록)** 장관표창 이상이거나, 국표원장 표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13. **(20.공적내용)** 공적분야별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내용의 각 항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고, 분량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별지 제4호]

이 력 서

성 명				※ 사진 포함 (반명함판 3×4cm) (사진파일 삽입)
생년월일	년 월 일	연 령	만 세	
거주지주소				
휴대전화				

소속 업체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경력사항

년 월 일	학력 및 경력사항	비고

위의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인)

※ 학력은 졸업연월 기준, 경력사항은 최초 입사부터 모든 경력을 순차로 기입

[참고]

공적내용 작성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제품안전에 관한 공적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써 제시하는 것으로, 신청자(단체)별 공적의 우수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공적내용 작성 유의사항

- 공적내용은 명확한 사실여부에 따라 정량적인 지표를 근거로 하여 작성합니다.
 - 제품안전에 관한 공적을 명확히 제시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량적인 수치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재한 공적으로 인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 취득이나 수상경력이 있을 경우, 특허번호 등 실제로 추진한 실적과 예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모든 공적사항은 2019. 6. 7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심사지표 항목과 연계하여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공적을 기재하여야 하며, 항목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그림, 도표, 그래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술적인 용어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을 통한 부가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 수행역할 및 중요성 등 업적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표(경쟁사 대비 우위사항, 동종업계 대비 등)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심사기준과 상관없이 제품안전에 관한 특별한 성과(세계·국내 최초, 세계·국내 1위, 독보적 기술 등)가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귀사(업계)의 현황, 기존의 문제점을 기재하며, 성과로 인한 결과(수출, 매출 상승, 산업파급효과 등)를 과정으로 정리하여 기재합니다.

○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정책 등의 관한 사항과 봉사활동 등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관련 정책 및 사회봉사 활동 사항을 기재합니다.